


보도일시	<b>2020. 10. 16(금) 조간 (온라인: 배포 즉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배포일시	2020. 10. 15.(목)		
보도내용 문의	대외협력 총괄	책임행정원 김병수 (02-6788-3925)	
	홍보 담당자	행정원 김여주 (02-2224-9821)	

## 국회미래연구원 “더 많은 입법보다 더 중요한 입법이 국회의 미래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발간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를 10월 15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박사는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의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 부 록 | 20대 국회 입법자들의 대화

○ 20대 국회 법사위원을 지낸 A의원

(법사위를 거쳐 간 법안 가운데 몇 개 정도를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내가 낸 법안이나, 쟁점이 크게 된 법안 몇 개를 빼고는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전에 법안을 읽고 상임위 전체 회의나 소위에 참석하기에는 법안이 너무 많다. 의원실 구성원들이 나눠서 검토한 의견을 겨우 취합해 가는 정도다.”

○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B의원

“부실한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법안 발의 실적 그 자체에 연연하는 의원들이 많다. 국회의원이자 자기 이름의 제정법 하나쯤은 만들어야지 하는 의원들도 많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이 아니라 의원들을 위한 법 만들기가 우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법 만능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20대 국회를 거치며 법률의 수가 1,500개를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법률은 시민 생활을 고소와 고발, 소송으로 넘쳐 나게 만든다. 법률이 많아지면 그걸 집행할 관료제의 규모가 늘고 행정부의 영향력만 키우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 16년 경력의 의원실 보좌관 C씨

“입법은 너무 중요하다.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입법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많은 법안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좋은 법안도 있고 중요한 법안이 없는 게 아니지만, 모든 법안을 책임 있게 살펴보고 대응하기에는 일단 법안이 너무 많다. 발의 건수 자체가 대폭 줄지 않으면 국회 기능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전에는 의원과 함께 의회정치를 같이 이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점점 입법 기술자가 되는 느낌이다. 의원들도 다른 사람이 낸 법안은 거의 안 본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은 솔직히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여야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다가도, 때가 되면 한 번에 몰아서 수백 건씩 통과시킨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회도 의원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 12년 경력의 의원실 보좌관 D씨

“사전에 법안을 검토하고 공동발의를 하는 일이 이제는 정상이 아니라 예외가 되고 있다. 의원이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받고 대충 법안 이름 정도를 확인하고는 공동발의 승낙을 한다. 그러면 그 방 비서가 와서 도장을 받아 간다. 법안을 읽고 검토한 뒤 공동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 일은 줄었지만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의원 자신이 공동발의를 하고도 그 사실을 잊고 상임위 표결에서 기권을 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종종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입법이 민주정치의 원리가 아닌 시장체제의 무한 경쟁의 원리에 지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참고 이미지】

